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편드명 : 트러스트증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	제45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. ~ 7. (생략) <신설>	제45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다) 3. ~ 7. (현행과 같음) 8. 투자신탁으로서 설정 이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

	8.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~ ⑨(생략)	<u>다는 사실</u> 10.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~ ⑨(현행과 같음)
	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</u>